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174호

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72번지 일원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13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 역 명	위 치	구역면적 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	동래구 낙민동 172번지 일원	67,006	2028. 2. 23.까지	-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 부터 2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051-888-4244), 동래구 건축과(051-550-4604)에 관계서류 비치